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75
----------	-----

2021. 4. 30.(금)  
교 육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- 나. 제출일자: 2021년 4월 13일
- 다. 회부일자: 2021년 4월 16일
- 라. 상정일자: 2021년 4월 23일

(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기획국장 구분학)

가. 제안이유

- 2021. 1. 1.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성인식개선팀이 신설되고 기존 업무추진부서인 학교자치과의 ‘성별영향평가’ 관련 업무가 체육건강안전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를 수정·보완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구성 변경  
(현행)당연직위원 “학교자치과장” 을  
(변경)당연직위원 “체육건강안전과장” 으로 변경함(제4조제3항1호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 (수석전문위원 홍만표)

- 본 조례 개정안은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개정(2021.1.1. 시행)에 따라 ‘성별영향평가’ 업무의 소관부서가 교육국 학교자치과에서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로 변경됨에 따라, ‘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위원회’ 의 당연직 위원을 그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1호 중 “학교자치과장”을 “체육건강안전과장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학교자치과장”을 “유아특수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p> <p>1. 당연직 위원: 정책기획과장, <u>학교자치과장</u>, 행정과장</p> <p>2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체육</u> <u>건강안전과장</u>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성별영향평가법

[시행 2018. 9. 28.] [대통령령 제29095호, 2018. 8. 14., 일부개정]

제13조의2(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성별영향 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지방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8. 3. 27.>

② 지방위원회의 기능,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5. 2. 3.]

[제목개정 2018. 3. 27.]